

# (여수해양경찰서)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22일

여수해양경찰서장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·도선 및 유선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**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게시장소 및 게시사항)**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·도선과 유선장·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.

구분	유선·도선	유선장·도선장
게시장소	출입구 또는 객실 내	대표소 및 승선장 입구
게시사항	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⑦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	①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, 폐업,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

**제4조(게시물의 규격 등)** ①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게시물의 규격

- 가.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: 가로 200mm, 세로 300mm 이상
- 나.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: 가로 300mm, 세로 400mm 이상
- 다. 대표소 및 승선장: 가로 200mm, 세로 300mm 이상
- 라. 구명조끼 착용범위: 가로 120mm, 세로 30mm 이상

2.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

- 가. 재질: 아크릴, 철 또는 폴리염화비닐(PVC)
- 나. 색상: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
- 다.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: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,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

②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

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.

③ 유선·도선 및 유선장·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.

**제5조(게시사항의 세부내용)** ① 유선·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
  2.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. 다만, 「선박 안전법」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.
  3.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, 영업구역은 해리(海里)·해점(海點)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
  4. 승객의 준수사항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
  5.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, 성인용·어린이용·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
  6. 인명구조장비,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
- ② 유선장·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

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6조(게시장소)** ① 유선·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

같다.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.

1. 승선료, 선박대여료, 운임, 승선정원, 영업구역,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·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2. 구명조끼 착용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3.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·어린이용·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
4.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

② 유선장·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대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(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재검토 기한)**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

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

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게시방법의 예시(제4조제3항 관련)

**유람선 승선료**

구분	대인	소인
주간유람		
점심식사 포함		
야간유람		
저녁식사 포함		

300mm

200mm

**유람선 승선료**

구분	대인	소인
주간유람		
점심식사 포함		
야간유람		
저녁식사 포함		

400mm

300mm

**구명조끼 보관함**

구분	대인	소아	유아
	개	개	개

300mm

200mm

의자밑에 위치 ↓

**구명조끼 보관함**

구분	대인	소아	유아
	개	개	개

400mm

300mm

의자밑에 위치 ↓

<b>표식</b>	<b>유아</b>	<b>어린이</b>	<b>성인</b>
<b>몸무게</b>	<b>15kg 미만</b>	<b>15~43kg 미만</b>	<b>43kg 이상</b>
<b>키</b>	<b>100cm 미만</b>	<b>100~155cm 미만</b>	<b>155cm 이상</b>

← 120mm →

↑  
3  
0  
m  
m  
↓